

# 전국대회참가 입상선수 격려금 지급규정

제정 2021.09.24

**제1조(목적)** 본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각종 전국대회(친선대회 제외)참가를 적극 권장함을 목적으로 본 규정에 의하여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조(격려금 지급)** 각종 전국규모대회에 참가하여 3위 이상 입상한 고·대·일반 선수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단, 국제대회는 예외로 하며 초·중학교 선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도 있다.

**제3조(대회구분)** 각종 전국규모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대통령기(배)쟁탈 전국 시·도대항 대회
2. 국무총리기(배)
3. 장관기(배)
4. 전국종별 선수권대회
5. 국가대표 선발대회
6. 언론기관주최 전국대회
7. 종목별 단일종별 선수권대회
8. 각종 연맹전
9. 기타 전국규모대회

**제4조(격려금 지급기준)** 격려금의 지급은 다음 표에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

1. 10개 시·도 이상 참가대회

구분		등 위	1 위	2 위	3 위
단 체	10인 이상		300,000원	200,000원	100,000원
	경 기	10인 미만	200,000원	100,000원	50,000원
개 인 경 기			50,000원	30,000원	20,000원

2. 10개 시·도 미만 참가대회

구분		등 위	1 위	2 위	3 위
단 체	10인 이상		200,000원	100,000원	50,000원
	10인 미만		100,000원	50,000원	30,000원
개 인 경 기			30,000원	20,000원	10,000원

3. 전국체전 입상선수 및 임원은 해당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지급

제5조(참가 및 결과)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할 선수는 해당 소속단체장 및 종목단체에서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본회에 참가 통보를 하고, 입상한 선수는 상장사본 및 프로그램을 첨부하여 본회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본회에 보고하지 않은 선수가 입상하였을 경우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제6조(운영) 본 규정 이외의 특별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**부 칙 (2021.09.24)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.